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008148 판결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008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50820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양판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G

피고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서기원, 원영은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5082048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44,540,000원 및 그중 72,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4.부터, 4,8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540,000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는 96,360,000원 및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8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4.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360,000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3. 18. 설립되어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는데, 원고와 E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5. 16.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와 E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서명 옆에 원고와 E의 각 도장이 찍혀 있다. 원고는 2015. 5. 11.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다. E은 2017. 8.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G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갑 제7호증에 관하여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변제기를 대여일 다음 날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2. 8. 8.	120,000,000	72,000,000	48,000,000	2012. 8. 9.	소송비용
2	2012. 7. 15.	2,000,000	1,200,000	800,000	2012. 7. 16.	생활비
3	2012. 7. 19.	5,000,000	3,000,000	2,000,000	2012. 7. 20.	생활비
4	2013. 2. 3.	5,000,000	3,000,000	2,000,000	2013. 2. 4.	생활비
5	2013. 3. 25.	8,000,000	4,800,000	3,200,000	2013. 3. 26.	생활비
6	2013. 5. 2.	900,000	540,000	360,000	2013. 5. 11.	생활비
합계		140,900,000	84,540,000	56,360,000		

나.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3, 5,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누나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F 명의 각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위 가.항의 표 대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돈이 각 계좌이체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망인 내지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위 가.항의 표 기재 각 송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행하여졌다는 자신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위 대여금액을 변제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 내지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위 가.항의 표 순번 1 소송비용 대여사실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2015. 5. 22. 망인과 원고의 대질신문에서 망인이 위 1억 2천만 원 중 8000만 원은 포르쉐 차량 양도대금이고 4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주장한 간접사실들이 일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 금전 수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이 부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이사로서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대여사실을 다투는 이 부분 송금은 소비대차 외에도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행해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망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원고와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5. 11.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망인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1/2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여신거래약정서(갑 제7호증)의 망인 명의 서명 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제1심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신거래약정서(갑 제7호증)에 망인 명의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고, 이는 대질신문조서(갑 제37호증)의 서명과 비교하였을 때 망인의 필체와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이 법원에서 '2014. 5. 16.경 I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여신거래대출을 체결하였고, 갑 제7호증에 있는 망인의 서명과 날인은 망인이 직접 한 것이며, 당시 함께 대동한 여직원이 망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BK기업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로 발생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함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 채권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그 성립일(대위변제일)인 2015. 5. 11.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20. 5.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민법 제480조,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가 취득한 구상권은 대위의 원인 또는 본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가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여 그 변제에 의하여 생긴 구상권도 당연히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상행위로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구상금 1억 원 × 상속분 3/5), 피고 G는 40,000,000원(= 구상금 1억 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봉원

판사최승원

판사김태호